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 나. 행정안전부 기구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중복 및 분산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생활접점분야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 신설 및 개편

구 분	내 용
현 행	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안전행정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개 편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나. 과 신설 및 폐지

- 1) 신설 : 미래전략담당관, 일자리경제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공동주택과, 대중교통과, 유통과
- 2) 폐지 :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 치매안심지원단

- 다. 사업소 신설 및 통합

- 1) 신설 : 서울사무소
- 2) 통합 :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 평생교육원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개발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경제기획국에 두는 과) ① 경제기획국에 기획예산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및 일자리경제과를 둔다.

② 경제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3.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5. 시의회 운영 지원
6. 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7. 신산업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9. 구미전자정보기술단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업지원 및 기업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업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6.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7.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및 전국체전추진단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항
4. 관광정책 수립, 추진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6.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교육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및 회계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

6. 공무원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0.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위생과, 종합허가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복지 업무
5.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및 환경보전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농공단지 조성 관련 사항
4. 도시재생 사업 추진
5. 도시경관 및 거리미관 사업 추진
6.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10.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변시설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 및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동락공원 관리 및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

8. 교통수단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963에 둔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기술홍보사업
3. 4-H조직,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
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
5. 농업기술, 경영, 농업정책 사업에 관한 상담
6. 지역특화작목 품종개량
7. 새로운 품종 지역적응 시험
8. 과학영농 시설운영
9. 식량작물 및 농업환경개선 기술지도
10. 토양정밀 검정 및 개량 시비법 개선 지도
11.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재배기술 지도
12. 농업인상담소 운영

제17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미시평생교육원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강사관리 및 평가·연수

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라.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

마. 시립 예술단 운영

바.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

사.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아.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자.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

차.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카.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2.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업무

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다. 상·하수도 경리 및 세입·세출 결산

라. 상·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수입의 과징

- 마. 시설물(상·하수도)의 확장, 신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 바. 취·정수, 생활·공업용수의 생산 및 수질검사, 송·배급수에 관한 사항
- 사. 상수원관리 및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 자. 상·하수도 행정관련 업무
- 차. 하수처리장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 타. 그 밖에 상·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가. 금오산도립공원 관리
- 나. 공원 행락질서 계도단속
- 다. 공원청소 및 환경정비
- 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과태료 부과징수
- 마.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 바. 공원내 조경시행 및 수목관리
- 사. 도립공원 정화, 복원지구의 보존관리
- 아. 공원매점 사용허가 및 관리
- 자. 도립공원 개발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4.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산물 및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경매장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및 운영

나.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6.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가.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나.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다. 경로식당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항

라.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마. 노인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및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사. 노인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노인 물리치료 및 양·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자. 노인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7. 구미시서울사무소

- 가.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활동
- 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 및 정책자료 수집
- 다. 수도권 정보,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등 시정수행 지원 활동
- 라. 재정 출향인 시정참여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유지

제5장 출장소

제21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무, 보안, 복무단속, 공인관리
2. 일반민원 업무
3. 문서수발 및 통제
4. 선산문화회관 관리
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승인, 허가 및 협의사항 제외)
6.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및 농업환경 보존
7.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

8. 잠업, 과수,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도
9. 정부양곡 관리
10. 농산물 등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지역특산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축산 경영개선사업
13.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5.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지자원화사업
16. 산불예방 및 진화
17.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18. 산림병해충 방제

제6장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조례 제1237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에 따라 해당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동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출)행정민원과, (출)농정과, (출)유통과, (출)축산과, (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을 “경제기획국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5호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④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투자통상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투자통상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정책과장

2. 도시계획과장

⑦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⑧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 안전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기획국장,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⑫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경제기획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⑮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⑯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⑰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⑱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⑲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제기획국장

⑳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㉒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㉓ 구미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민원봉사과장”을 “행정민원과장”으로 한다.

㉔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㉕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㉖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㉗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

로 한다.

㉘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㉙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생활안정과장”으로 한다.

㉚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㉛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안전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㉝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 도시과”를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로 한다.

㉞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건설수변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㉟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건설수변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㊱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㊲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㊳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㊴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④⑩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진흥·사회복지·건설·건축·공원녹지·수도·하수과장”을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노인장애인·건설수변·건축·공원녹지·수도·하수과장”으로 한다.

④⑪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정·유통축산과장”을 “농정·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④⑫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축산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을 “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④⑬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유통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④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 농정과장, 유통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유통과장”으로 한다.

④⑤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유통축산과장”을 “유통과장”으로 한다.

④⑥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축산과장”을 “유통과장”으로 한다.

④⑦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④⑧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⑨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제4항 중 “유통축산과장”을 “유통과장”으로 한다.

⑤⑩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5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 정책기획실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기획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 구미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구미보건소	구미시 선산대로 111(지산동)	구미시일원 (제외 읍·면지역)
보건지소	인동보건지소	구미시 이계북로 149(진평동)	인동·진마·양포동일원

< 선산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시 읍·면지역 일원
보건지소	고아읍보건지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80	고아읍 일원
	무을면보건지소	구미시 무을면 문화마을길 32	무을면 일원
	옥성면보건지소	구미시 옥성면 주아령로 411	옥성면 일원
	도개면보건지소	구미시 도개면 궁기4길 15	도개면 일원
	해평면보건지소	구미시 해평면 송선로 523-14	해평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99-6	산동면 일원
	장천면보건지소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4	장천면 일원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진료소	구미시 선산읍 배다리길 90	습례1·2리, 봉남1·2리 소재리
	연악보건진료소	구미시 무을면 상송길 11-18	오가1·2·3리, 상송리 안곡1·2리
	덕촌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582	산촌리, 태봉1·2리 대원1·2리, 덕촌1·2리
	구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5	구봉1·2리, 옥관1·2리
	가산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157-1	가산1·2리, 동산리 용산1·2리
	다곡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471	다곡1·2리, 신림리 도개1·2리
	낙산보건진료소	구미시 해평면 낙산2길 21-4	낙산1·2·3리, 일선리
	대방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포아로 636-5	신촌리, 황산리,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
	구운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송평로 141	괴평1·2리, 송림리 다식리
	송백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860	백현1·2리, 송산리
	임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면 임봉길 47-1	봉산1·2리, 임천리
	금산보건진료소	구미시 장천면 장천금산3길 10-3	금산리, 오로1·2리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구미시평생교육원	구미시 산호대로 243 (공단동)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구미시 금오산상가길 12 (남통동)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구미시 산책길 51 (원평동)
구미시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동선동)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1조관련)

출장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구미시선산출장소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 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 (단, 농정, 유통, 축산, 산림업무는 관할구역을 시전역으로 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문 창 균
	담 당	박 노 돈
	담 당 자	김 동 균 (480-6773)